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2. 11.

제 출 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제43조의 개정(2002.01.14)으로 인하여 수리계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본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과 맞게 통일하여 수리계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구미시수리계관리조례”로 함.
- “농업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함.
- “농지개량계” 및 “개량계”를 “수리계”로 하고, “농지개량계장”을 “수리계장”으로 함.
- “농지개량계규약준칙”을 “수리계규약준칙”으로 한다.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제43조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2002. 11. 21.
구미시의회 의장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수리계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①시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부과경비·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을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수리계 규약) 수리계는 제5조에 의거 수리계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수리계규약준칙”에 의거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규약은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한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규약서식】

수 리 계 규 약 준 칙

제1조 (목적) 이 수리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수리계는 ○○수리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3조 (물리구역) 이 수리계의 물리구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전부를 물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물리구역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 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 (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물리구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 (선거방법등) 수리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방법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총회) ①수리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②수리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8조 (수리계의 임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된다.

③ 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수리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 수리계는 수리계 그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3. 기타 수리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1조 (사업의 위탁) 수리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구미시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부과) ①수리계의 경비는 금전,노역 또는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버 〇 〇Kg이상

2등지 :

3등지 :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수리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 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수리계장이 정한다.

제13조 (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2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 (수리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금으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한다.

제15조 (예산집행 철저) 수리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칙과 규약준칙 이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6조 (결산)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리계의 해산) 수리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농림부령 제1355호 99.12.31)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수리계장은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관리) ○ ○ 수리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공포후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left(\frac{O+H}{H}\right)$$

수리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제외명칭				
계원수				
계구역면적				
수혜면적	ha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				
시설명	시설형태	소재지	수혜면적	비고
구미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각1부)				수입인지
1. 규 약				없 음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부속시설,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후면)

제출 및 처리기관	시 장
근 거 법 규	제4조 (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시 장)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등록증교부

【별지 제2호 서식】

수리계등록부

[illegible]

수 리 계 등 록 증

계 의 명 칭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구 역 면 적 : ha

수 혜 면 적 : ha

구미시수리계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 (인)					
참 조 :									
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							
1. 수리계 현황									
조직일자	계 원 수(인)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수혜면적	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	부과 계원수	부 과 내 역		징수액 (원)	징수율 (%)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			
		현 금 (원)							
※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적립금 상황									
예산액	결산액	결산액 증개,보수비				감 가 상 각 비			
		보 조	차입금	자부담	계	작년 이월	당년 실적	당년 사용액	총당금전 액누계
					원				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	정비부분	경 비 소 요 액			비 고				
		현 금	기 타	계					
※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규약서식】

수리계원명부

[illegible]

수리계운영자금 수입지출부

[illegible]

수리계비부과신청서

수 리 계 :
 소 재 지 :
 주 시 설 명 :
 몸 리 면 적 :
 부 과 금 액 :

구 분	부 과 내 역			
	계	현 금 또 는 현 물		노역부담액
		적립금	기 타	
부과총액				
반당부과액				

수리계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20 연도 수리계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수리계장 ○○○ 귀하

첨 부 : 1. 부과내역서
 2. 산출근거

수리계비부과내역서

등급별	성 명	부 과 액			부 과 내 역		
		면적	반당	총액	계	현금현물	노역부담
합계							
1	소계						
1	소계						

수리계비산출내역서

구 분	내 역	총 액	근 거
	합 계		
현금부과액	소 계		
	적 립 금		
	시설유지비		
	개 보 수비		
	기 타		
노력부담금	소 계		
	시설유지비		
	개 보 수비		
	기 타		

